

서울디자인재단-라쿠텐(일본)
2017 K-Fashion Trend by Seoul
공동개발 협정서

ソウルデザイン財団 - 楽天株式会社
2017 K-Fashion Trend by Seoul
共同開発協定書

서울디자인재단(이하'갑'이라 칭함)과 라쿠텐(일본)(이하'을'이라 칭함)은 서울의 디자인 패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라쿠텐 공동캠페인 「2017 K-Fashion Trend by Seoul(가제)」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

ソウルデザイン財団（以下、甲と呼ぶ）と楽天（日本）（以下乙と呼ぶ）はソウルデザインファッション企業の海外進出のために楽天共同キャンペーン【2017K-Fashion trend by Seoul（仮）】の開発に相互協力する。

제 1조 (목적)

본 협정은 「2017 K-Fashion Trend by Seoul (가제)」 캠페인' 개발에 '갑'과 '을'의 상호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第 1 (目的)

本協定は【2017K-Fashion trend by Seoul】（仮）キャンペーンの開発に‘甲’と‘乙’の相互に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ある。

제 2조 (공동캠페인 개요)

가. 캠페인명 : '2017 K-Fashion Trend by Seoul'

나. 채널명 : 라쿠텐 쇼핑몰

다. 캠페인기간 : 2016년 12.20 ~ 2017.1.31

※광고노출 : 라쿠텐여성패션 장르탑

라. 브랜드 및 상품 등록수 : 10개 브랜드 30개 상품

第 2 (共同キャンペーンの概要)

① 企画名: '2017 K-Fashion Trend by Seoul (仮)』

② 媒体 : 楽天市場

③ キャンペーン期間 : 2016年 12.20 ~ 2017.1.31(予定)

※広告露出 : 楽天レディースファッションジャンルトップ導線

④. ブランド及び商品登録数 : 10ブランド 30商品

제 3조 (약정 기간)

본 약정의 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캠페인 등록 후 정산 시까지로 한다.

※ 캠페인 평가 후 재 협정할 수 있다.

第 3 (約定期間)

本約定の期間は約定締結日からキャンペーン登録後、清算の時までにする。

※ キャンペーンの評価後に再協定ができる。

제 4조 (협정금액 지급)

가. 협정 금액은 일금이천이백만원(22,000,000 VAT포함)으로 한다.

나. 갑은 을로부터 협정서를 체결한 후 캠페인 등록 후 14일 이내에 본조 가항의 금액 전

액을 라항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 협정금액의 사용은 서울의 디자인 패션기업의 라쿠텐(쇼핑몰) 상품 등록, 번역, 캠페인, 정산비로 사용한다

라. 계좌번호 : / 예금주 :

第 4 (協定金額支給)

- ① 協定金額は二百万円（税別）にする。*最終確認必要
- ② 甲は乙から協定書を締結した後キャンペーンを登録して14日以内に本項目の金額を全額を乙の口座に入金する。
- ③ 協定金額の使用はソウルデザインファッション企業の楽天商品登録、翻訳、キャンペーンクーポン代として使う。
- ④ 口座番号 : / 名前 :

제 5조 (정책변경)

‘갑’과 ‘을’의 정책 변경으로 캠페인에 변경이 예상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후 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第 5 (政策変更)

甲と乙の政策変更でキャンペーンに変更が予想される場合、即時相互通報し、相互協議して対応する。

제 6조 (권리의 귀속)

가. 이 캠페인은 ‘갑’과 ‘을’의 공동개발로 ‘갑’은 캠페인 공동주관사와 공동후원사로 노출되며, 서로 협력해 캠페인을 발전시킨다.

나. 특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 명, 서브타이틀명, 심볼

등을 출판물, CF, 행사, 공연물, LD 제작, CD롬 제작, DVD 제작, 인터넷 기타 새로이 등장하는 일체의 매체 및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협의해 사용한다.

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사용된 이미지는 본 캠페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협의해 사용한다.

第 6 (權利の帰属)

- ① 本キャンペーンは甲と乙の共同開発として甲はキャンペーンの共同主管社と共同パートナーとして露出され、お互いに協力してキャンペーンを発展させる。
- ② 特約で特に定めない限り ‘キャンペーン’ を構成するタイトル名、サブタイトル名、シンボルなどを出版物、CF、イベント、公演、LD製作、CDルーム製作、DVD製作、インターネットなどの新たな媒体及び商品に使用する権利は必ず甲と乙が共同で協議して使用する。
- ③ 本協約と関連して使用されたイメージは本キャンペーン以外の目的で使う場合、必ず甲と乙が共同で協議して使用する。

제 7조 (협정서 해지)

가. ‘갑’또는 ‘을’이 약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각기 서면 통보 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법령의 변경,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행정기관의 처분 등으로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 7 (協定書解約)

- ① 甲及び乙が約定のある条項を違反する場合、相手方は各自書面通報で本約定を解約できる。
- ② 法令の変更、裁判所の判決などの決定、行政機関処分などで本契約を維持することが難しい場合、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契約の解除は損害賠償の請求には影響を齎さない。

제 8조 (기타)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 기타 상관례에 따른다.

第 8 (その他)

本約定に明示されていない事項は法律、その他慣例に従う。

2016年 12月 1日



Seoul Design
Foundation
CEO Lee Keun